

신 탁 계 약 서 변 경 전 후 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(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투자매매업자{외국 투자매매업자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} 또는 투자중개업자{외국 투자중개업자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}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가. 판매수수료 :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5%</p> <p>나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5%</p> <p>11. (생략)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(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투자매매업자{외국 투자매매업자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} 또는 투자중개업자{외국 투자중개업자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}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가. 판매수수료 :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<u>2%</u></p> <p>나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<u>1%. 다만,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%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%에서부터 1.5%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제24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</p>

	<p><u>매)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</p> <p>2.~10. (생략)</p> <p>②~⑤ (생략)</p> <p>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<u>판매회사</u>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⑦~⑩ (생략)</p>	<p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 자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u></p> <p>2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<u>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⑦~⑩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